

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입원·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·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
(신청기간 : 2020년 2월 17일 ~ 별도 공지시 까지)

##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
**신청자격*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·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「감염병예방법」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
\* 단,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

**지원금액**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
생활지원비	454,900	774,700	1,002,400	1,230,000	1,457,500

\*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

**신청기관**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**신청서류**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

\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※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바랍니다.

